

# 보 고 서

문서번호	공사감독2처-3545	담당	팀장	공사감독2처장		
보존기간	5년	이동호	이업	05/13 代전영조		
결재일자	2022.05.13.	협 조				
공개여부	비공개(6)					

제목 준공기한연기 검토보고(총정교 보수공사)

## I 공사 개요

- 공 사 명: 총정교 보수공사(장기계속)
- 공사기간: 2021.12.06. ~ 2022.12.31.(1차분 2022.5.31.)
- 공 사 비: 금1,152,661,570원(1차분:금420,193,570원)
- 공사개요
  - 탄성받침(68개소) , 신축이음(92m) , 교면방수 및 포장(476㎡)  
미끄럼방지포장(249㎡) , 단면보수(171㎡) , 교량난간(32m)
- 도 급 사: (주)케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권 우 현
- 발 주 청: 서부도로사업소(시설보수과)

## II 보고사항

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사로부터 접수된 “준공기한 연기 요청”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.

- 접수문서 : 준공기한 연기 요청 건-장기1차[2022-총정-0023호(2022.05.13.)]

## 가. 공정 현황

- 현 공정율 : 14%(2022.5.13. 기준)
- 작업 완료사항 : 교량인상(A2)
- 잔여 작업사항
  - 교좌장치 콘크리트깨기 및 설치

## 나. 도급사 준공기한 연기 요청 사항

### ○ 준공기한 연기 사유

#### ○ 철도 관련 연기 (87일)

1. 국가철도공단 선로작업계획 사전협의로 인한 착공지연(협의기간 2022.1.20. ~ 2022.3.4.) : 42일
  - 2022. 1월20일 ~ 31일 철도공사 선로작업계획 사전협의를 ▶11일 부족
  - 2022. 2월 철도공사 선로작업계획 사전협의를 ▶28일 부족
  - 2022. 3월1일 ~4일 철도공사 선로작업계획 사전협의를 ▶3일 부족
2. 한국철도공사 선로협의로 인한 월별 작업일수 부족 : 45일
  - 03월 : 16일 작업승인 ▶ 15일 부족
  - 04월 : 16일 작업승인 ▶ 14일 부족
  - 05월 : 15일 작업승인 ▶ 16일 부족

### ○ 준공기한 연기 요청일

- 당 초 : 2021.12.06. ~ 2022.05.31.
- 변 경 : 2021.12.06. ~ 2022.07.30.(60일 연장)

## 다. 준공기한 연기일수 검토

### ○ 철도 관련 연기 (51일)

1. 국가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협의로 인한 착공지연 : 22일
  - 2022. 3월 4일 국가철도공단 협의완료
    - ※ 당초 예정공정표 1월 협의완료 → 2월분 작업일수 적용 : 22일
2. 한국철도공사 선로협의로 인한 월별 작업일수 부족 : 29일

- 03월 : 16일 작업승인 ▶ 월간 작업일수 25일중 9일 부족
- 04월 : 16일 작업승인 ▶ 월간 작업일수 26일중 10일 부족
- 05월 : 15일 작업승인 ▶ 월간 작업일수 25일중 10일 부족

○ 준공기한 연기 일수 산정

- 관련근거 :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[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80호]

공사기간 = 준비기간 + 작업일수 + 비작업일수 + 정리기간				
62일	=	0일	+	51일 + 11일 + 0일

⇒ 준비기간 : 0일

⇒ 작업일수 : 51일

▶ '22.6월(24일), 22.7월(26일), 22.8월(1일)

※ 작업일수 :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절대 작업일수

⇒ 비작업일수 : 11일

▶ 22.6월(6일), 22.7월(5일)

※ 비작업일수 : 법정공휴일

⇒ 정리기간 : 0일

라. 검토 결과

○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검토

- 국가철도공단과의 “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조건부 수리 및 통보” 시설 관리처-5285(2022.03.04.) 협의일수 소요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운행협약에 의거 월별 감안하여 검토한바, 작업일수 51일은 연기 가능하며,
- 시공 품질확보 및 안전한 공사 운영을 위해 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”에 의거 비작업일수 11일을 연기 가능함.

○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, 총 공사기간은 62일 연기가 가능하나 도급사 요청 내용과 같이 2022.07.30.까지(60일)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주청에 준공기한을 연기 요청코자 함.

마. 조치 계획

○ 준공기한 연기 : **총 60일**

구 분	기 간
당 초	2021.12.06. ~ 2022.05.31.
변 경	2021.12.06. ~ 2022.07.30.

- 지체상금 부과 여부 : 미부과
- 귀책사유 : 없음

### III 조치사항

- 상기 검토사항을 발주청에 제출하고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.

- 붙 임 1. 준공기한 연기원(시공사 제출) 1부.  
2. 준공기한 연기관련 서류 1부. 끝.